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20 발의연월일: 2020. 9. 1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윤후덕 · 김홍걸

고용진 • 이상헌 • 이수진

서삼석 • 전용기 • 양정숙

장철민 · 최종윤 · 김민철

정청래・양기대・박 정

박성준 • 이재정 의원

(179]

제안이유

현행 「문화예술진흥법」과 「문화재보호법」은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흥을 하거나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,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 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,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

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 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(안 제7조).
 - 다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 흥위원회를 둠(안 제8조).
 - 라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12조).
 - 마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함(안 제13조).
 - 바.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

- 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16조).
- 사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(안 제17조).
- 아.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,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 방송을 둠(안 제18조).
- 자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.

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 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"국악"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(樂)・가(歌)・무 (舞)・희(戲)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 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.
 - 2. "국악문화산업"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(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·무형의 재화·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)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우리나라 국악의 우수 성을 널리 알리고, 국악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시설의 설치, 인력·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

여야 한다.
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위하 여 5년마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 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국악문화산업진흥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
 - 2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 - 3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 - 4. 국악의 교육과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
 - 6.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 - 7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 - 9.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

라 매년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8조(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) ①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
 - 2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정책의 조정과 주요시책의 평가 및 연구· 조사
 - 3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
 - 4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교육콘텐츠 개발 및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

-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·지원)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 화산업 관련 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기반조성, 국악의 대중화 ·생활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그 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 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

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
- 제13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, 대학, 그 밖의 기관 을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 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국악의 생활화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이 국가의례, 교통신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생활음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
- 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)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소관 시설에서 음악을 방송할 경우 국악이 우선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) ①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 문화산업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송사업자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 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·편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7조(국악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) ①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-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

- 2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
- 3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
- 4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
- 5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
- 6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·시설 및 단체 간의 상호연계, 협력망 구축·활용
- 8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
- 9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·공유·활용에 관한 사업
- 10.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국가는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
-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8조(국악방송) ①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,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.
 -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.

-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
- 2. 국악의 창작, 교육 및 대중화
- 3.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
- 4. 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
-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다.
- ⑤ 국악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.
-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9조(보고·검사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2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특별자치시장·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국악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준비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악문화산업진흥원설립준비위원회(이하 "준비 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준비위원회는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④ 준비위원회는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 - ⑤ 준비위원회 및 준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·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- ②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제1 8조에 따른 국악방송(이하 "신국악방송"이라 한다)의 설립과 동시에 신국악방송이 포괄 승계한다.
- ③ 신국악방송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 액으로 한다.
- ④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신국악방송의 명의로 본다.
- ⑤ 신국악방송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신국악방송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- ⑥ 신국악방송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재단법인 국 악방송은 그 재산 및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⑦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직원은 신국악방송의 직원이 된다.